



惡性家畜傳染病 방역대책

배상호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무이사



1. 머리말

최근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소와 돼지에 구제역 발생과 돼지콜레라, 재발생 그리고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바 있으며, 국내에 발생한바 없는 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등 새로운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 Zoonosis)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소비자의

불신과 소비불안 심리에 따라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서 축산물의 소비마저 위축되는 등 예측불가능한 축산산업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생태계의 변화 등에 따라 앞으로 동물과 사람에서 공동으로 발생하는 신종전염병의 창궐을 경고하면서 지난 5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수

역사무국(OIE), 네덜란드 보건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중위생과 수의학·미생물학·생태학 등의 국제전문가회의를 소집하여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감시와 통제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물론 아시아에서 큰 피해를 가져온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 일명 조류독감)와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니파바이러스 등 신종질병에 대한 최신정보 교환과 국제사회의 공동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4.27일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합동으로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양부서 합동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별로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은 물론 질병별 대책매뉴얼 개발

추진과 신속정화한 질병정보를 공유하기로 결정한 것은 무척 다행한 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악성가축전염병과 동물유래전염병에 대한 피해상황 및 방역추진상의 문제점 그리고 방역대책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악성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 발생 및 피해상황

가. 전염병의 분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가축전염병을 List A·B로 분류하여 총95종이 등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제1종과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여 62종이 지정되어 법정관리되고 있다. List A 전염병과 제1종 가축전염병은 구제역·우역·

(표2-2) 연도별 우리나라 발생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동물종류	세균	리icket치아	진균	바이러스	프리온	원종	연종	계
소	14	1	10	8	1	1	4	39
돼지	9	-	6	7	-	2	6	30
말	1	-	11	6	-	-	-	18
면양	6	1	2	10	1	2	2	24
산양								
개	1	2	10	3	-	3	12	31
고양이	-	-	4	1	-	2	5	12
설치류	8	5	4	10	-	3	9	39
조류	10	1	3	15	-	1	1	31
기타	6	1	4	9	-	3	6	29
야생동물								
병원체수	55	11	54	69	2	17	45	253
질병종류	23	6	16	45	1	6	23	120

※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제공

(표2-2) 연도별 우리나라 발생 주요 인수공통전염병

구 분	'98	'99	'00	'01	'02	'03
공수병	-	1	-	1	1	2
브루셀라	-	-	-	-	1	16
탄저	-	-	-	-	-	-
파상풍	3	4	16	8	4	-
장출혈성대장균	-	-	1	11	8	52
렙토스피리증	90	130	106	133	122	119
쯔쯔가무시	1,140	1,342	1,758	2,638	1,919	1,416
신증후군출혈열	215	196	203	323	336	392
일본뇌염	3	1	-	1	6	1
말라리아	3,932	3,621	4,142	2,556	1,799	1,160
계	5,383	5,295	6,226	5,671	4,196	3,158

※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제공

돼지콜래라·뉴캣슬병·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등 15종으로서, 동물에서 매우 치명적이고 전파가 빠르며 국경에 상관없이 사회적·경제적 및 공중위생상 막대한피해로 동물과 사람 및 그 생산물의 국제교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어 발생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악성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인수공통전염병은 이중 약 70%에 달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총 200여종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물의 종별·병원체별 인수공통전염병의 종류(표2-1)는 253개 병원체에 120종의 전염병이 확인되었고, 이중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45종으로 38%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인수공통전염병(표2-2)은 '03년에 3,158건으로서 이중 쯔쯔가무시 병이 1,416건으로 45%를 점유하고 있다.

나. 전염병 발생피해 영향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보고한 가축질병으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평가금액(Report on Animal Health Economics)은 국가별 축산업 총생산의 20~24%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연간 약2조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02년 축산업 총생산 : 9.1조원)

최근 주요국별 구제역 손실평가는(표2-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0년에 3,006억원, 2002년에는 1,434억원을 살처분 보상금 등으로 농가에 지급하였으며, 대만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약41조원, 영국은 2001년에 총 14조4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발생한 인수공통전염병에 의한 피해사례는 (표2-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2-3) 주요국별 구제역 경제적 손실평가 비교

		발생		발생		직·간접 경제적 손실총액	비고
		농가	두수	농가	두수		
한국	'00 3~4월	건 15	소 81두	건 182	2,223두	3,006억원	살처분 및 예방접종 ·우제류(2회) 1,523천두
	'02 5~7월	16	소 77두 돼지 59,979	162	160,155두	1,434억원	살처분
대만	'97 3~12월	건 6,147	돼지 1,196천두	건 6,147	4,659천두	총 41조원 (5년간)	살처분 및 예방접종 - '00년부터 전 우제류가축 예방접종 (연2회)
	'98	6	돼지 3,449두	6	3,916두		
	'99	16	돼지 · 소 5,922두	10	6,715두		
	'00	6	소 · 염소 · 돼지 744두	6	744두		
영국	'01 2~10월	건 2,030	돼지 · 양 · 소 4,068천두	건 2,030	10,849천두	총 14.4조원 - 축산 : 1.6조원 - 관광 : 7.6조원	살처분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은 '85년 영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04.5월 현재) 세계 24개국 약 188천두의 소에 발생되었으며, 사람의 변형아콥병(vCJD)은 153명 (영국 143, 프랑스 6, 캐나다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미국 각 1)이 발생보고(미국 CDC 자료) 되었다.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HPAI)는 '03년 말부터 지금까지('04. 5월현재) 한국과 일본을 비롯 중국 · 태국 · 베트남등 동남아 12개국과 미국등 국가에서 동시에 대량으로 발생하였으며, 태국과 베트남 · 홍콩 등에서는 사람에게도 감염되어 24명이 사망하였다.

중증호흡기증후군(SARS, 일명 사스)은

'02.11월 중국의 광동성을 중심으로 발생되어 홍콩 · 싱가포르 · 미국 · 카나다등 전세계 30여개국으로 확산되어 지금까지('04.5월 현재) 8,103명이 발생하여 775명이 사망하였으며, 발생원인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 (SARS Corona virus)가 원인체로 알려져 있고 사향고양이(masked palm civet) · 너구리(raccoon dog) · 중국흰족제비오소리 (chinese ferret badger)등 동물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밖에 신종 질병인 웨스트나일병(말) · 니파바이러스병(돼지) · 에볼라병(원숭이)등에 의한 피해와 최근 애완 · 유기동물을 매개체로한 사람의 질병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표2-4) 인수공통전염병 및 피해사례

증 별	주요 발생국가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
소해면상뇌증 (BSE, 일명 광우병)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칼,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미국 등 24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형야콥병(vCJD)으로 153명 발생 ◦ 영국 농업 및 식품관련 : 약 9억파운드(1조 6천억원) ◦ 일본 2천억엔 이상 손실(약 2조원)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HPAI, 일명 조류독감)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한국, 미국, 멕시코 등 14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12~'04.5 : 태국·베트남에서 24명사망 ◦ 미국 : 약 4억1만불(약 5천억원) ◦ 한국 : 19건 발생 1,500억원 피해
중증호흡기증후군 (SARS, 일명 사스)	중국, 홍콩, 미국, 캐나다 등 30여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11~'04.5 : 총 8,103명 발생 775명 사망
웨스트나일(Westnile)병 (말)	아프리카(이집트, 케냐, 중앙아프리카, 우간다, 알제리등), 유럽 12개국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 중동 및 중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02년 4,200명 발생, 사망 284명 '03년 1,481명 발생, 사망 24명 ◦ 이스라엘 : '00년 13명사망
리프트(Rift)계곡열병 (소·양)	아프리카대륙,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 사우디아라비아 및 예멘에서 발생, 102명사망
니파(Nipha)바이러스병 (돼지)	'99년 말레이시아 최초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 256명 감염, 105명 사망, 손실액 217백만달러(2천8백억원) ◦ 싱가폴 : 8명 감염, 1명 사망
에볼라(Ebola)병 (원숭이)	자이레, 수단, 가봉, 우간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500명이상 발생, 사망률 50~88%

※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제공

3. 방역추진상의 문제점

가. 가축방역 행정조직체계상의 문제

가축방역업무의 특징은 신속한 질병신고와 병성감정 및 이동통제 그리고 살처분과 보상 등이며 이 3단계가 긴밀히 이루어져야만 악성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종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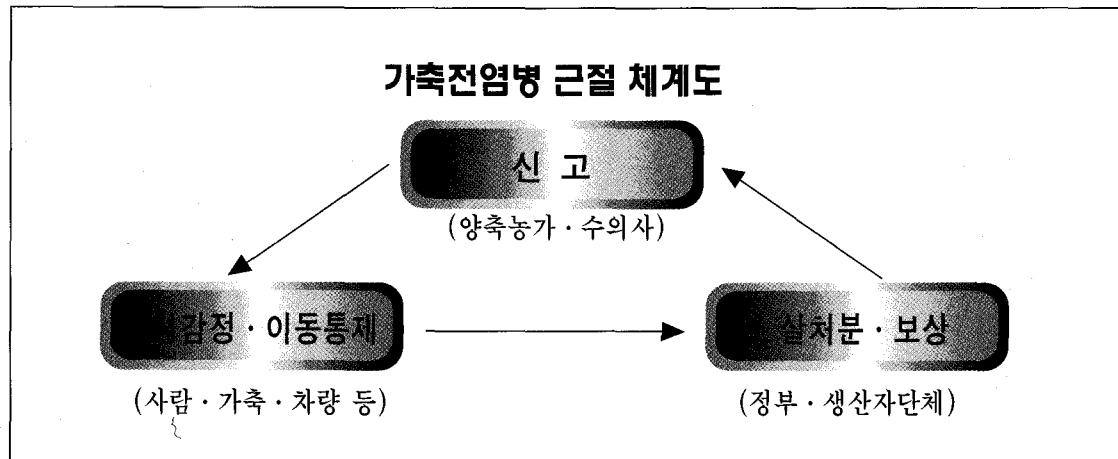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가축방역조직은 (표3-1)에서와 같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농림부에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그리고 시·도축산과 위생

계와 가축위생시험소등으로 지방분권화 되어 있다.

〈외국의 동향〉

최근 일부국가에서는 구제역과 광우병 등 발생에 따라 정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국별 개편상황은 다음과 같다.

- 영국은 2001년 6월 농업식품부(MAFF)가 환경식품농촌부(DEFRA)로 변경되어 축산 및 식품분야는 큰 변화가 없으나,



(그림 3-1)

동물보호(Animal welfare)분야가 내무부로부터 환경식품농촌부로 이관되어 환경분야와 농어촌 분야가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다.

- 독일은 2001년 1월 이전까지는 보건부에서 식품위생 및 가축위생분야를 담당하고, 농림식품부에서는 가축방역과 농림수산업 진흥위주의 정책을 담당하였으나, EU의 광우병(BSE)파동여파로 정부의 조직개편 이후 농림 식품부는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로 개칭되어 식품위생·축산물작업장위생 관리·검역·소비자보호등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2002년부터 소비자보호 식품농업부산하에 소비자보호식품안정청과 위험평가 연구소등 2개의 새로운 기관이 신설되었다.

- 프랑스는 1999년 4월 이전까지 농수산식품부·노동사회연대부·경제재정부 하부에서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농수산식품과 축산산업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유럽을 강타한 광우병 사태 등으로 안전성 평가에 대한 관리업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1999년 4월 식품(축산물포함)·사료에 관한 안전·위생과 영양에 대한 위험평가를 전담하는 식품위생안전청(AFSSA)이 신설되었으며, 식품의 안전성 평가등 위험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일본은 농림수산성에서 동물방역 및 축산진흥업무를 관장하고 후생성에서는 축산물 검사등 식품위생업무를 관장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으며, 2000년 정부

(표3-1) 주요 선진외국의 수의행정 및 시험·연구조직 (총괄)

국가명	중앙행정조직	시험·연구조직	비고	특징
미국	농무부(US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검사처(FSIS) ○ 동식물검사처(APH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수의연구소(NVSL) ○ 국립동물질병센터(NADC/A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무소(5) ○ 지구사무소(26) 	일원화 광역화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국(V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수의연구원(CVL) - Pirbright, Webridge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의검사소(3) ○ 지구사무소(27) 	
프랑스	농수산식품부(MA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동식물검역차관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수의식품연구원(CNEVA) ○ 식품위생안전청(AFS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위생시험소(100) 	
캐나다	농수산식품부(MA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검사청(CFIA) - 동물위생국 - 식품검사국 등 7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질병연구소등 6개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가축위생연구소 ○ 식품위생연구소 	
독일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검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청 ○ 위험평가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식품검사소 	농수성으로 일원화
덴마크	농수산식품부(MA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식품청(FIA) - 3부(수의·식품·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연구소, 바이러스연구소 ○ 식품위생연구소 등 4 - 식품안전·독성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수의·식품시험소(11) 	일원화 광역화
호주	농림수산부(MA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검사원(AQ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위생연구소등 2 		
아르헨티나	경제부 식품차관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가축위생청(SENESA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위생연구소 		
일본	농림수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국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위생시험장 		농수성과
	후생노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보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검역소 		후생성
	내각부(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縣가축위생시험소 ○ 동물검역소 지소 ○ 縣식육위생검사소 	이원화
한국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국 기축방역과 ○ 축산물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기축위생시험소 ○ 검역원지원 	지방 분권화

조직 개편으로 후생성과 노동성이 통합되어 노동후생성이 되고 후생성 생활 위생국의 식품위생관리 업무가 의약국 식품보건부로 재편되었으나, 최근 광우병 파동으로 현행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의 역할 분담체계가 비판받음에 따라 조직 개편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은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과 별도로 식품의 안전성 평가등 위험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가칭 “식품 안전위원회”)을 내각부(內閣府) 산하에 신설·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영국, 독일등과 같이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기능을 분리하자는 것과 유사한 조직 개편 방안이다.

나. 국경검역상의 문제

세계무역자유화 추세와 각종 국제행사 등의 증가에 따라 인적·물적

교류확대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변국상황은 중국·몽고·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해외여행객과 휴대 축산물의 무단 반입 등에 의거 가축전염병과 신종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가입은 되어 있으나 회의참석은 물론 List A전염병 발생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리적으로 보아 국경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항만 검역체계가 세관검사 위주로 되어 있고 검역 인력도 태부족한 상태에서 해외전염병의 국내유입차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검역검사대”와 “세관검사대”的 비율은 호주 40:5, 한국 2:49이며, 시드니 공항은 검역인력이 400여명이 3교대로 근무하나, 인천공항의 경우 운항편수는 2배이상이나 11명이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음.

다. 구제역 발생지역 수입 건초 사용 문제

구제역 바이러스는 RNA바이러스로서 매우 미세하여 전파가 빠르며, 건초에서는 6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으므로 구제역 발생지역의 우제류 가축의 분변 등에 의하여 오염된 수입 건초에 대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준수와 소독사용이 철저히 이행되어야만 한다.

’03년 건초수입량은 511건에 87천여톤이고 금년 4월현재 97건 15천 여톤이 미국과 중국 등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사슴건초는 대부분 중국산 갈잎건초를 사용하고 매년 동남아 지역산 건초수입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조사료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생산지역 반경 50Km내에 구제역 비발생조건과, 수출시 열처리(중심온도 80 10분이상) 또는 포르마린 훈연소독(밀폐공간 19 이상 8시간이상 처리)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에서 수출국의 열처리

시설을 승인토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실제로 수출시 위생조건의 이행여부가 우려되고 있다.

라. 국내방역상의 문제

가축방역의 3대요건은 병인체를 사멸시키고, 전파경로를 차단하며, 내병성이 강한 건강한 개체를 사육하는 길이다. 따라서 축산농가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농장출입차단과 농장출입구와 기자재·축사 내외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소독이 요구되나, 농장출입 통제에 소홀할 뿐 아니라, 소독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소독을 정부에 의존하며, 질병방역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질병발생신고지연 등 방역위반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민선시장·군수 대부분이 축산(가축방역)사업에 투자가 미온적이며, 수의직 공무원이 없는 시·군이 과반이상(234시군 중 105명충원)되어 전문성이 결여되는 등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가축의 사육·출하 및 도축 단계별 유통경로 파악이 미흡하여, 중개상을 통한 문전거래나, 비실명으로 거래 기록이 없는 점은 방역에 크나큰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 가축의 사육환경상의 문제

질병예방을 위하여는 가축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나 축산 농가 대부분이 축사면적에 비하여 과밀하게 사육하거나, 축산단지 등

집단사육형태의 사육관행이 지속되어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폐사축 불법처리와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문제 또한 방역상 저해되는 사항으로서, 농장이나 도축장에서 폐사한 가축을 가축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소각·매몰 등 처리하지 아니하고 개사료로 공급하거나 퇴비사에 임의 방지하여 질병전파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남은 음식물을 열처리(80°C 30분 이상)하지 아니하고 양돈·양계사료로 재활용하는 점 또한 문제시 되고 있다.

바. 새로운 인수공통전염병과 야생동물 등의 방역문제

최근 지구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에 따라 변종병인체의 출현으로 웨스트나일병(Westnile)·에볼라(Ebola)병·니파(Nipha)바이러스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창궐이 우려되고 있으며,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유기동물과 애완동물 등의 관리분야가 취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야생조수류와 철새 등에 의한 방역 문제로서, 봉고지방 독수리의 죽은 가축 섭취에 의한 구제역 전파와, 시베리아 지방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등의 전파가 우려되며, 휴전선 인접지역의 야생멧돼지에 의한 돼지콜레라 발생과, 너구리·오소리 등에 의한 가축과 사람에 대한 광견병 발생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속출되고 있는 사항이다.



3. 방역추진상의 문제점

가. 가축방역 행정조직 체계강화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확대개편하여 모든 농축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단계 까지 일관성있는 농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농림부 축산국을 수의축산국으로 개편하여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 및 축산물위생에 관련된 정책기획, 제도개선 및 국제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현재의 가축방역과를 2개과로 증설 개편하여 방역기획 및 기반조성업무와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담당 업무를 분장하며, 수의심의관(2·3급)을 신설하여 가축방역 1과, 2과 및 축산물위생과 업무를 관장토록 하여 중앙 방역조직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확대 개편하여 동물 위생방역본부(1급)로 격상하고 수의과학연구소를 신설하여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국경검역, 국내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 업무와 동물약품안전관리 등에 관한 연구와 기술지원 분야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연계·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부서별 전문 기술 인력을 대폭 보강함으로서, 국내외 가축질병 또는 축산식품의 안전성 문제 발생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첨단수의기술 개발 및 지자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도록 조직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조직의 보강 및 제도적·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도에 축산과 외에 가축위생과를 신설·보강하고 시·군에 축산과를 설치·운영하며,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조직강화와 수의축산 전문인력을 보강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법적 설치 근거가 없어 지자체장이 임의로 조직을 축소 또는 합병하므로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지난하므로, “가축위생시험소법” 제정 운용이 필요하다.

나. 국경검역기능강화

검역기능강화를 위한 추진방향은 검역수요 증가와 남북교류활성화에 대비하여, 체계 적이고 지속적인 검역강화 사업추진으로 선진검역체계를 구축하며, 위험평가에 근거한 과학적인 검역·검사제로 도입과, 국제협력 및 해외정보수집활성화를 통한 분야별 대응 체계 구축 그리고 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하겠다.

공·항만 해외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색 강화를 위하여는, 관세법을 개정·보완하여 세관에서 축산물 휴대품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검역인력(기능직포함)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공·항만에서 외국의 축산행사참석자에 대한 소독 등 특별 검역을 실시하고, 특히 중국·몽골·러시아 등 악성전염병 발생국 여행객에 대한 검색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밀수와 밀입국자에 대한 단속과 회항 선박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고(세관·해경

협조), 항공기·선박의 남은 음식물 안전 처리감독을 강화하며(건교부·해운부 협조), 수입조사료의 수출국 소독 등 위생조건이행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현지 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입검역시 현물검사 강화로 가축의 배설물 등의 오염여부확인과 위반시 수입규제 등을 과감히 시행하여야 하겠다.

국경검역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시 검역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입국전 사전홍보를 실시하며, 공·항만에서 출국전 육류휴대와 농장 방문을 자제토록 홍보하고 지자체와 축산관련단체·항공사·여행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그밖에 가축질병 비발생지역주의제도 도입에 대비한 위험평가체계 확립을 위하여 비발생지역인증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지침을 제정하여 위험확인·위험평가·위험관리·위험정보교환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전문가 양성과 수입위험평가모델을 개발하여야 하겠다.

다. 국내차단방역철저

전염병 병원체 농장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는 축산농가들의 소독 등 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고취와 자율방역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먼저 상시예찰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의심축에 대한

조기신고와 색출체계를 확립하고, 전염병 정기검진과 정밀혈청검사·지자체시험소 및

대학 등 민간병성감정기관의 질병검사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하겠다.

둘째는, 농장소독시설설치기준과 소독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소독시설 비대상별 실시주체와 소독시기 등을 명시하고, 소독시설에 대한 실태파악과 설치미비농가에 대한 계도와 소독방법 등 농가교육을 강화하여야하며, 농가 고용 외국인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하여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책임의식과 능동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방역추진실적 등의 평가에 의한 축산정책자금차등화지원과 신고포상금지급 제도화 그리고 시군별 “지역방역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민간방역 기관간 역할분담 등 민간방역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농장의 출입자·차량 등에 대한 이동경로를 사전조사 하여 D/B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그밖에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며, 종돈장·중계장·부화장에 대한 방역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방역우수 종돈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추백리·가금티프스 양성계군의 도태장려금 지급 등 종계장·부화장 관리체계를 재정립하여야 하겠다.

또한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에 대한 특별방역관리와 폐사가축에 대한 방역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내차단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라. 축산물 위생검사와 가축방역사업 연계 추진

가축질병 검색을 위하여는 농장출입검사와 함께 도축장·도계장 등 가축집합시설에서 임상검사와 혈청검사 등 정밀검사를 통하여 병축 출하농장이 추적되어 해당농장에 대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농장추적 검사를 위하여는 농장주에 의한 가축출하증명서 발부를 의무화하고 도축검사 신청에 정확히 출하농장이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축산식품에서부터 농장을 역추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바, 최근 광우병의 공포 속에 EU와 일본 등 국가에서는 축산식품에 문제 발생시 출하농장을 추적해내는 추적시스템(Traceability)이 개발·응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농장에서 식탁(Farm to Table) 까지 유해요인을 분석하며 사전차단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의 실행단계에서, 이제는 식탁에서 농장(Table to Farm) 까지 역추적시스템을 개발·응용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밖에 애완동물 및 유기동물에 대한 방역관리방안과 야생조수류에 대한 서식·이동상황파악 및 질병조사 등 방역 관리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하여 범정부적 대응체계 사전구축과 부처간 및 국제적 협조 체계 강화로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5. 맷음말

악성가축전염병을 근절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가축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방지로 양축농가의 축산소득을 증대시키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공급으로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막중한 사명과 임무 수행에 있다. 가축질병으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은 국제수역사무국(OIE)보고에 의하면 축산업 총생산액의 20~24%로 추산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연간 약2조원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새로운 변형 야콥병(vCJD)과 중증호흡기증후군(SARS)등 인수공통전염병의 공포 속에 양축농가는 물론 소비자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다. 위와같은 전염병근절을 위하여는 정부의 조직체계 및 법령·제도개선 등 방역시스템구축과 양축농가의 자율 방역의지가 확립되어야만 한다.

또한 가축방역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신속·정확한 신고와 진단 그리고 이동통제와 살처분대책 등의 추진이 긴밀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서 질병청정화와 안전축산물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같은 악성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은 양축가와 방역관련기관·단체 모두가 긴밀한 협조하에 일시적이 아니고 항구적이며 혁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굳건한 각오와 노력으로 희망을 갖는 우리의 축산업으로 재도약 할 것을 기대한다. 